

2015년도 시행 제57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 사 소 송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원래 甲 소유이던 X토지에 관하여, 甲의 친구인 乙은 甲으로부터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을 뿐,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2013. 1. 30. 甲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면서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31.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2014. 1. 20.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14. 2. 5.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甲은 2014. 3. 15. 乙, 丙을 상대로, 乙이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1. 위 소송에서 乙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2. 위 소송에서 丙은 ①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② 설령 乙이 甲으로부터 X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乙에게는 甲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고, 丙이 乙의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 (1) 丙의 위 ①, ② 주장이 항변인지 부인인지 구별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15점)
 - (2) 만약 丙이 위 소송에서 ② 표현대리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심리한 결과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의 조치 및 판단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10점)

3. 甲이 乙, 丙만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丁을 피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丙의 연대보증 하에 乙에게 금 8,000만 원을 변제기 2011. 4.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丙은 乙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지자 甲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2012. 10. 20. 친구인 丁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건물에 대하여 2012. 10.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丁 명의로 마쳐주었다. 한편 甲은 乙이 위 채무의 변제기일이 지나도 변제를 하지 않자, 연대보증인인 丙의 재산관계를 알아보던 중, 丙 소유의 위 X건물이 丁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을 2015. 1. 9. 알게 되었다.

1. 甲이 2015. 2. 4.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누구를 피고로 정하여 제기하여야 하는가? (10점)
2. 위 1.의 소송계속 중 丙의 또 다른 채권자인 戊가 위 소송과는 별도로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2015. 3. 5.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戊의 소는 적법한가? (15점)

〈제2문의 2〉

甲은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매매대금과 공작물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 ① 甲이 1심에서 매매대금청구 부분은 패소하고 공작물인도청구 부분은 승소한 후 패소한 매매대금청구 부분 중 일부인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 계속 중 2억 원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 ② 甲이 1심에서 전부패소 후 매매대금청구 부분만 항소하였다가 공작물인도청구 부분도 항소취지로 추가하는 경우,
- ③ 甲이 1심에서 전부패소 후 2억 원의 매매대금청구 부분 중 일부인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한 후 환송심에서 2억 원으로 항소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위 ①, ②, ③이 가능한지 여부를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시오. (25점)

확 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